

<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약관 개정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 1조~제 14조 <생략></p> <p>제 15조(일임계약의 종료시 계좌내 재산처리)</p> <p>①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고객에게 교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고객은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투자일임재산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</p> <p>제 16조~제 17조 <생략></p> <p>제 18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	<p>제 1조~제 14조 <좌동></p> <p>제 15조(일임계약의 종료시 계좌내 재산처리)</p> <p>① <좌동></p> <p>② <u>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지체없이 고객 계좌 내 투자일임재산을 환매·매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제3조 제1항 및 제 2항의 과세특례를 부여한다. 단, 이때 매도되지 않은 투자일임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.</u></p> 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고객에게 교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고객은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투자일임재산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</p> <p>제 16조~제 17조 <좌동></p> <p>제 18 조 (청약의 철회) ① <u>고객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46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일임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(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)로부터 7 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<별첨>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.</u></p>	<p>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의 2 신설 반영</p> <p>번호 순연</p> <p>금소법 제46조 반영</p> <p>금소법 제47조 반영</p>

<p>제 19조 <신설></p>	<p>제 19 조 (위법계약의 해지) 고객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</p>	
<p>제 18조~제 22조 <생략></p> <p><신설></p>	<p>제 20조~제 24조 <좌동></p> <p><부칙></p> <p>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 가입분부터 시행한다.</p> <p>단, 제 15조제2항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 137조의2 개정 시행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시행한다.</p>	<p>번호 순연</p>
<p>[별지] <생략></p> <p><신설></p> <p>※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</p>	<p>[별지] <좌동></p> <p>[별첨]</p> <p>제 18조제2항의 “<별첨>에서 정하는 연체이자”는 다음과 같다.</p> <p>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,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 379조의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.</p> <p><좌동></p>	<p>금소법 제46조 반영</p>